

「구미시 모자·부자보건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희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5인

3. 제안이유

- 최근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유산, 조산 등 임신 관련 건강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밀한 산전 진료와 검사가 요구되고 있어 35세 이상 임신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하며, 아울러 정신건강 지원 및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관련 사업은 운영 실태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: 모자·부자보건사업(안 제3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5, 제11조
 - 「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임신부 정신건강 지원 및 난임·유산·사산 극복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 명칭을 정비하고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른 임신 합병증 위험을 완화하고자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·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1)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임신군인 35세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출산장려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지원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정책의 본래 취지(고위험 산모 지원)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, 경상북도 조례와의 일관성 확보 및 고위험 산모 지원이라는 조례 개정 취지가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복지 혜택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 체계 구축, 성과평가 지표 마련, 주민 홍보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.

1) 제5조(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)

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모자·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35세 이상 임신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 <신설 2025. 7. 14.>